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해상 비행방식 명시 〉

■ 손명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47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손명수의원 대표발의(2208147)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공해상 비행방식 등(안 제67조제3항 신설 등)	3

□ 손명수의원 대표발의(220814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손명수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5. 2. 13.
3. 회 부 일 : 2025. 2.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협약」(우리나라는 1952.12.11에 가입)은 국제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비행에 관한 기준·절차·방식에 관한 사항을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 정하고 공해상(公海上)에서는 이를 차이점 없이 반드시 지킬 것을 명시함.

우리나라도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하는 비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항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 범위가 영토·영해·영공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그 대상을 자연인에서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공해상에서의 같은 협약 준수 의무를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비행규칙의 적용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에서 법인·기관·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공해상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의 준수 의무를 명시(안 제67조제1항·제3항)

Ⅲ. 검토의견

1. 공해상 비행방식 등(안 제67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4의2. (생략) 24의3. “항공교통데이터”란 항공교통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제67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u>사람이</u>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비행계획 및 이와 관련된 자료 마. ~ 카. (생략) 25. ~ 34. (생략) 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 ①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u>사람은</u>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절차·방식 등(이하 “비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② 비행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 -----. 1. ~ 24의2. (현행과 같음) 24의3.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u>자가</u> ----- ----- 마. ~ 카. (현행과 같음) 25. ~ 34. (현행과 같음) 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 ① ----- ----- <u>자는</u> ----- ----- ----- -----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2. 시계비행에 관한 규칙 3. 계기비행에 관한 규칙 4. 비행계획의 작성·제출·접수 및 통보 등에 관한 규칙 5. 그 밖에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 <u><신 설></u>	<u>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른 기준·절차·방식 등에 관한 사항이 비행규칙과 다른 경우 공해상(公海上)에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① 공해상 비행방식

현행법 제67조는 비행규칙을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비행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제민간항공협약」 제12조는 각 체약국으로 하여금 자국 영토 상공에서는 그 국가에서 시행 중인 비행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되, 그 비행규칙은 가능한 한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른 기준과 일치하도록

하면서, 공해상에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정한 규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국제민간항공협약 제12조 】

원 문	번 역
Article 12 <i>Rules of the air</i> Each contracting State undertakes to adopt measures to insure that every aircraft flying over or maneuvering within its territory and that every aircraft carrying its nationality mark, wherever such aircraft may be, shall comply with the rule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the flight and maneuver of aircraft there in force. Each contracting State undertakes to keep its own regulations in these respects uniform, to the greatest possible extent, with those established from time to time under this Convention. <u>Over the high seas, the rules in force shall be those established under this Convention.</u> Each contracting State undertakes to insure the prosecution of all persons violating the regulations applicable.	제12조 <i>비행규칙</i> 체약국은 자국 영토 상공에서 비행하거나 기동하는 모든 항공기와, 그 항공기의 위치에 관계없이 자국 국적 등록기호를 부착한 모든 항공기가 해당 지역에서 시행 중인 비행 및 기동 관련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약속한다. 각 체약국은 이러한 규정들을 본 협약에 따라 수시로 제정되는 규정과 최대한 일치하도록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 <u>공해상에서는 본 협약에 따라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u> 각 체약국은 적용 가능한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에 대한 처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자료 : 국토교통부

이에 개정안은 공해상에서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국내 비행규칙이 아닌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른 규칙을 준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체약국으로서 해당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국내법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은 법적 정합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우리나라는 현재 관련 내용을 운항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황임.

【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1.10 】

1.10 공해상에서의 비행규칙(Compliance with Annex 2 over the high seas airspace)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기장은 공해상공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2의 규정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② 비행규칙 준수 의무 주체 확대(사람 → 자)

현행법 제67조제1항은 비행규칙 준수 의무의 주체를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1) 「항공안전법」

제77조(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과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항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자격증명
2. 항공훈련기관
3. 항공기 등록 및 등록부호 표시
4. 항공기 감항성
5. 정비조직인증기준
6. 항공기 계기 및 장비
7. 항공기 운항
8.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및 관리

9.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소유자등 및 항공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때 ‘사람’은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는 자연인과 법인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임²⁾.

이에 개정안은 비행규칙 준수 의무의 주체를 자연인에서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으로 확대하여 법인 등의 비행규칙 준수를 위한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사람’을 ‘자’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임.

특히, 운항기술기준에서는 공해상에서의 비행규칙 준수 의무를 기장뿐만 아니라 항공운송사업자(법인)에 대해서도 부여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제67조에 따른 비행규칙을 위반할 경우 제159조3)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 같은 법 제164조4)는 법인의 관리 책임을

2)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p.76

자(者) → 사람, 자

- 법령에서는 ‘자’가 ‘자연인’이나 ‘법인’의 법인격을 가진 명칭으로 쓰인다.

- ‘자’나 ‘사람’ 모두 ‘자연인’인 ‘사람’을 나타낼 때 쓸 수 있지만 ‘자’가 ‘사람’만을 의미할 때에는 ‘사람’으로 고쳐 쓴다.

- ‘자’가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으면 ‘사람’으로 바꾸지 않고 ‘자’를 그대로 쓴다.

3) 「항공안전법」

제159조(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① 운항승무원 등으로서 제67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또는 비행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운항승무원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6조, 제67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68조, 제79조 또는 제100조제1항을 위반한 자

③ 기장 외의 운항승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죄를 지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기장도 해당 조문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기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6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4조, 제145조, 제148조, 제150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법인의 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도록 하여 법인이 비행규칙 준수를 위해 관리책임을 이행하도록 관련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항공기 운영자의 공해상 비행규칙 준수사항을 법률에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문 의 처
02)6788-5580